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2015. 9. 8.

사건번호 2015년 형제42465호

제 목 불기소결정서

검사 채필규는 아래와 같이 불기소 결정을 한다.

I. 피의자 레거 파스칼(LEGER PASCAL)

II. 죄 명 업무상횡령

III. 주 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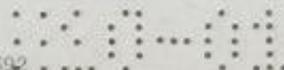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IV. 피의사실과 불기소이유

가. 2013. 5. 8.경부터 2014. 1. 13.경까지 앙드뜨와 레스토랑을 공동 운영하면서 27회에 걸쳐 합계 36,090,000원을 인출하여 업무상횡령

○ 고소인 제임스 레이몬드 풀리나는 앙드뜨와 레스토랑의 제너럴 매니저로서, 피의자가 그레고리 러스로이드와 위 레스토랑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27회에 걸쳐 합계 36,090,000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그레고리 러스로이드는 피의자가 그 일부는 회사 용도로 사용하였으나 나머지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한다.

○ 이에 대하여 피의자는 그레고리 러스로이드와 각자 50퍼센트의 지분을 갖고 본 건 레스토랑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면서, 사업상 필요한 자금을 재량에 따라 지출하되 그 결과가 성공적이지 않을 경우 피의자가 이를 부담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위 레스토랑의 확장 및 영업 등을 위한 용도로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으며, 모든 지출이 회계법인의 확인을 받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였고, 동업자와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 후 본인의 자금으로 상환하였다고 변명한다.



○ 피의자가 본건 회사 계좌를 관리하였던 점, 본건 금원 인출과 같은 시기인 2013. 6. 18.경부터 2013. 12. 6.경까지 회사 계좌에 합계 4,000만원 상당을 개인 자금으로 입금하였던 점(별책 제1권 거래내역조회 참조) 등은 위 변명에 부합한다.

○ 위 사실을 종합하면,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나. 2013. 9. 25.경부터 2014. 8. 1.경까지 회사 카드를 임의로 사용하여 8회에 걸쳐 합계 16,139,786원 상당의 카드 대금이 결제되게 하고, 10회에 걸쳐 식사를 하고 대금 14,404,000원을 결제하지 않아 업무상횡령

○ 고소인 제임스 레이몬드 풀리나는 피의자가 위 레스토랑을 공동 운영하면서 회사 카드를 임의로 사용하여 합계 16,139,786원 상당의 카드 대금이 결제되게 하였으며, 10회에 걸쳐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대금을 결제하지 않았는바, 이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고 진술하고, 그레고리 러스로이드는 피의자가 그 일부는 회사 용도로 사용하였으나 나머지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한다.

○ 이에 대하여 피의자는 본건 레스토랑을 공동 운영하면서, 회사 카드를 관리하고 사업상 필요한 경우 카드 한도 내에서 사용하되 결과가 성공적이지 않을 경우 피의자가 이를 부담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투자자들에 대한 접대용으로 카드를 사용하거나 그에 수반되는 유틸리티 등을 지출하고, 본건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였으나, 동업자와 그 지출에 관하여 이견이 생기자 합의대로 자신의 채무로 부담하였다고 변명한다.

○ 실제 피의자가 운영자로서 회사의 신용카드를 관리하였던 점, 계약서에 의하면 본건 동업의 목적에 새로운 식당 영업, 가맹점 영업권 사용, 영업 품목 개발, 지적 재산권 가치 극대화' 등을 명시하고 있는 점(별책 제2권 참조), 주점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에 관하여 본건 레스토랑의 영업을 위하여 사업 투자자들과 술을 마셨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제출한 점, 2013. 10.경부터 12.경까지 그레고리 러스로이드와 지출 내역 및 그 처리에 관하여 연락을 주고받았던 점, 2014. 12. 17.경 피의자가 카드 사용 및 레스토랑 식사비용 등의 지출을 개인채무로 정산하고, 지분 포기 대가 1억원 중 개인채무 3천만원 상당을 공제한 금원만을 지급받기로 그레고리 러스로이드와 약정한 점 등은 위 변명에 부합한다.

- 위 사실은 종합하면,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다.